

소프트웨어 일괄발주 사유서

사 업 명	AI 학습데이터 품질평가 검증/보강 기술 실증															
예산과목	프로 그램	단위	세부	하위1	하위2	하위3	목	세목								
	2100	2131	302	007	000	000	260	01								
예 산 액	900,000,000원			발주금액		900,000,000원										
관련법규 및 근거	「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4조 (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판급)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 -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-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-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 (과기정통부 고시 제2023-15호) 제8조(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3항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															
사 유	- 본 사업은 AI 학습데이터 품질평가 검증/보강 기술 실증을 위해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 등을 구매/ 설치하고 데이터 품질평가 및 합성데이터 생성 체계(SW)를 개발하는 사업임 - 본 사업을 통해 도입이 필요한 SW는 데이터 품질평가 및 합성데이터 생성 체계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서버관리 및 성능평가용 단말을 운용하기 위한 Windows OS 3식이며, 전체 시스템 예산 대비 약 0.2% 비율임. - Windows OS 구매 수량이 3식으로 소수이기 때문에, 이를 별건의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것보다 AI 학습데이터 품질평가 검증/보강 기술 실증 사업간 전체 시스템과 함께 구매하여 동시에 납품하는 것이 시스템 적기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저하게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. - 위와 같은 사유로 아래 SW 일괄발주함.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소프트웨어 품목</th><th>수 량</th><th>제외사유</th><th>비 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Windows 11 Pro Enterprise K(64bit)</td><td>3</td><td>소액으로 분리 발주할 경우 현저하게 비효율적임</td><td>-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	소프트웨어 품목	수 량	제외사유	비 고	Windows 11 Pro Enterprise K(64bit)	3	소액으로 분리 발주할 경우 현저하게 비효율적임	-
소프트웨어 품목	수 량	제외사유	비 고													
Windows 11 Pro Enterprise K(64bit)	3	소액으로 분리 발주할 경우 현저하게 비효율적임	-													

육군 시험평가단 단장 준장 이운장

(서명)